

가정양육 실태 및 지원서비스 활성화 방안¹⁾

Home-based Child Care and Policy Recommendations for Its Enhancement

김은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국내의 가정양육지원 정책으로는 시설보육서비스 미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양육수당과 시설보육의 사각지대 및 가정 내 보육수요를 지원하기 위한 아이돌봄 지원사업이 있다. 영아기에 대한 가정양육 선호도가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양육수당은 시설보육 이용자와 형평성 측면에서 많은 차이를 가지고 있어, 가정양육에 대한 부모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 분석결과, 전반적으로 개인양육서비스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개인돌봄서비스에 대한 수요증가를 고려할 때 공적서비스 차원에서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활성화와 사적서비스 차원에서 돌봄제공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방안이 요구된다.

1. 들어가며

2013년 전 계층 무상보육과 양육수당이 도입되면서 양육에 대한 국가적 책임확대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국내의 자녀양육 지원 정책은 크게 시설양육지원과 가정양육지원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²⁾. 시설양육지원 정책으로는 보육료·교육료(유치원) 지원정책이 있으며, 가정양육지원 정책으로는 시설 미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양육수당이 주요정책으로 자리하고 있다. 이 밖에 시설보

육의 사각지대 및 가정 내 보육수요를 지원하기 위해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시설보육의 경우 운영시간의 한계로 다양한 유형의 양육 공백에 적절한 대응을 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양육시간에 대한 탄력적 선택이 가능한 개별돌봄에 대한 수요 및 필요성이 증대한다고 볼 수 있다³⁾.

특히 맞벌이 가구의 경우 양육의 어려움을 크게 경험하고 있으며, 직장생활로 인해서 발생하는 양육시간의 공백은 개인대리양육 혹은 시설양육으

1) 본고는 김은정 외(2014), 자녀양육 실태 및 돌봄지원 서비스 개선방안: 맞벌이 가구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내용 중 가정양육지원서비스 부분만을 수정 보완한 것임.

2) 세제지원 및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노동정책은 논의에서 제외시킴.

3) 이미화·홍승아·서문희·정민자·권혜진·임양미·신보원(2011), 수요자 입장에서 본 자녀양육지원정책의 방향과 과제, 여성가족부.

로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다. 기존 연구에 의하면 맞벌이 가구의 경우 근로로 인한 양육공백을 개인 대리양육과 시설양육 중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하는 것보다, 두 가지 양육서비스를 조합하여 이용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⁴⁾. 다만, 개인대리양육 서비스는 시설양육서비스에 비해서 이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더 크다는 제약이 있다.

맞벌이 가구의 자녀양육 공백 또는 시설양육으로 채워줄 수 없는 부분을 해결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아이돌봄 사업은 그 의의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자녀양육의 어려움은 맞벌이 가구의 경우 상대적으로 더 크게 느끼고 있는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맞벌이 가구의 양육부담 완화를 위한 차별적이고 독립적인 정책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가정양육지원 정책 현황을 살펴보고 가정양육 실태 분석을 통하여 맞벌이 가구의 양육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가정양육지원서비스 강화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2. 가정양육 지원 정책 현황

1) 양육수당

양육수당은 시설서비스(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미취학 영유아를 대상으로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과 이용하는 아동 간의 '형평성'을 기하고 궁극적으로 아동의 건전한 성장 발달 지원과 양육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정책목표를 두고 있다⁵⁾. 2009년 처음 도입 당시 차상위 계층(최저생계비 120%)을 대상으로 아동의 연령이 만 0~1세(24개월 미만)인 경우 월 10만원을 제공하였으며 점차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왔

표 1. 양육수당 지원금액(2014년)

| 양육수당 | | 농어촌 양육수당 | | 장애아동 양육수당 | |
|------------|----------|------------|----------|------------|----------|
| 개월 | 지원금액 | 개월 | 지원금액 | 개월 | 지원금액 |
| 0~11개월 | 200,000원 | 0~11개월 | 200,000원 | 0~35개월 | 200,000원 |
| 12~23개월 | 150,000원 | 12~23개월 | 177,000원 | | |
| 24~35개월 | 100,000원 | 24~35개월 | 156,000원 | | |
| 36~84개월 미만 | 100,000원 | 36~47개월 | 129,000원 | 36~84개월 미만 | 100,000원 |
| | | 48~84개월 미만 | 100,000원 | | |

자료: 보건복지부, 2014 보육사업안내, pp.325

4) 도남희·이정원·김문정(2012). 기업의 자녀양육지원 실태와 정책과제, 육아정책연구소.

류연규·김영미(2014). 영유아를 둔 취업모와 비취업모의 양육방식을 결정하는 요인은 무엇인가?, 4회 여성가족패널 학술대회.

5) 유해미·서문희외(2011). 영아양육비용 지원정책의 효과와 개선방안, 육아정책연구소.

다. 2013년 미취학 아동의 시설보육에 대한 '무상 보육'이 실시됨에 따라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 또한 보호자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전계층에게 보편적으로 지급하게 되었고, 아동의 연령을 만 0~5세로 확대하였다(표 1).

양육수당은 가정 내 보육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양육수당 이용자는 대부분 홀벌이일 가능성이 높으나⁶⁾ 맞벌이 중 아동을 보육시설에 보내지 않고 친인척이나 사설 베이비시터로부터 도움을 받는 경우 양육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점차 대상을 포괄적으로 수용하게 됨에 따라 양육수당을 지급 받는 아동의 수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표 2). 특히 2013년(1,053,071명), 2014년(1,006,825명)의 수급영유아 수는 2012년

(92,818명) 대비 10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소득수준에 따른 급여기준을 없애고, 아동의 연령을 확대함으로써 그 대상자가 획기적으로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전체 양육수당 지급 대상 아동의 69%가 23개월 이하 영아에 집중되어 있으며, 2014년 현재 양육수당의 연령을 만 5세까지 확장했음에도 주로 만 0세에서 1세가 양육수당 지급대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만 0세(0~11개월)의 경우 양육수당 지급 대상이 382,325명인 것으로 나타나, 수급대상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 1세 아동(12~23개월)은 308,741명으로 전년 대비 다소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 밖의 연령대에서도 다소 대상자가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2. 연도별 양육수당 지급 대상 현황 변화⁷⁾

(단위: 명, %)

| 연도 | 0~11개월 | 12~23개월 | 24~35개월 | 36~47개월 | 48~59개월 | 60~71개월 | 72~취학전 | 전체 |
|-------|-------------------|-------------------|-------------------|-----------------|-----------------|-----------------|-----------------|----------------------|
| 2010년 | 24,447 (47.2) | 27,391 (52.8) | - | - | - | - | - | 51,838 (100.0) |
| 2011년 | 36,662 (40.8) | 38,450 (42.8) | 14,644 (16.3) | - | - | - | - | 89,756 (100.0) |
| 2012년 | 35,514 (38.3) | 40,997 (44.2) | 16,307 (17.6) | - | - | - | - | 92,818 (100.0) |
| 2013년 | 382,327 (36.3) | 345,442 (32.8) | 143,948 (13.7) | 62,526 (5.9) | 37,977 (3.6) | 40,137 (3.8) | 40,714 (3.9) | 1,053,071 (100.0) |
| 2014년 | 382,325 (38.0) | 308,741 (30.7) | 143,650 (14.3) | 59,191 (5.9) | 38,747 (3.8) | 34,513 (3.4) | 39,658 (3.9) | 1,006,825 (100.0) |

자료: 보건복지부, 각 해당년도 「보육통계」

6) 홍승아 · 김은지 · 선보영(2013). 가정내 육아지원정책 현황과 개선방안: 양육수당제도와 아이돌봄서비스를 중심으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7) 장애아동, 농어촌아동의 양육수당 수급자 제외.

2) 아이돌봄 지원사업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개별 양육형태의 서비스를 통해 맞벌이 부모의 양육 경감 및 개별 양육을 희망하는 수요에 탄력적 대응, 경력단절 중장년 여성의 고용증진, 취약계층의 육아 역량강화, 궁극적으로는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시키고자 함에 있다(아이돌봄 지원법 제1조, 그림 1).

아이돌봄서비스는 기존에 선착순으로 서비스가 제공되었으나, 맞벌이의 서비스 욕구를 반영하여 우선순위를 취업모 중심으로 개편하였다(표 3). 이

를 통해 형평성간 균형을 유지하고 대기기간을 축소시키고자 하였으나, 예산 등의 이유로 1순위에 서 마감되는 경우가 많아 일반가정의 2순위까지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는데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아이돌봄서비스의 정책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만 12세 이하 아동을 필요한 시간만큼 돌보는 '시간제 돌봄'과 생후 24개월 이하 영아를 종일 돌보는 '영아종일제 돌봄'으로 구분된다. '시간제 돌봄'의 지원시간은 1회 이용 시 2시간 이상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연간 최대 480시간까지 사용 가능하다. 초등학교 방과 후 아동은 연간 최

그림 1. 아이돌봄서비스의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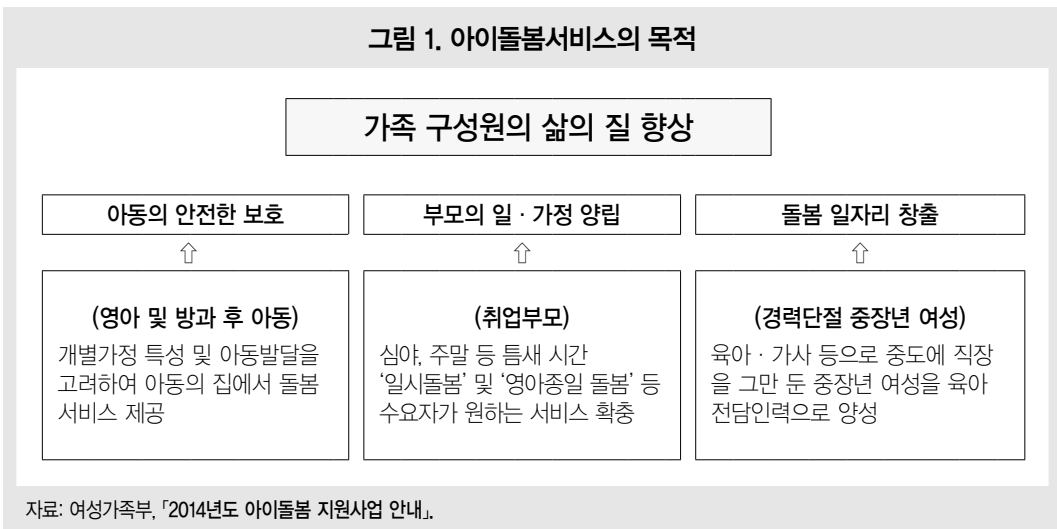


표 3. 아이돌봄 서비스의 우선순위

| 구분 | 저소득 | 일반가정 |
|-----|-----|------|
| 취업모 | 1순위 | 2순위 |
| 홀벌이 | 3순위 | 4순위 |

자료: 여성가족부, 「2014년도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표 4. 아이돌봄서비스의 지원대상 및 서비스 시간

| 구분 | 시간제 돌봄 | 영아 전일제 돌봄 |
|-------|---|--|
| 지원 대상 | 만 3개월 이상~만 12세 이하 아동 | 만 3개월 이상~만 24개월 이하 영아 |
| 지원 시간 | 1회 2시간 이상 사용원칙, 정부지원시간: 연간 480시간 이내 *나홀로 방치되는 초등학교 방과후 아동은 720시간까지 정부지원 | 1일 최소 6시간 이상 사용원칙, 정부지원시간: 월 120~200시간 이내 |

자료: 여성가족부, 「2014년도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대 720시간까지 이용시간을 확대하여 보육공백을 줄이고자 하였다. ‘영아 전일제 돌봄’지원 시간은 1일 최소 6시간 이상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월간 120시간에서 200시간 이내의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표 4).

사업서비스의 이용요금은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되나, 시간제 및 영아종일제 정부지원시간을 초과하는 아동은 시간제 ‘라’형으로 제공된다. 시간제의 경우 ‘라’형은 부모가 전액부담해야하나, 종일제의 경우 ‘라’형의 경우에도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보편적 지원서비스로서의 성

격이 한층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예산 등의 이유로 여전히 운영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용료는 본인이 부담하지만 돌보미 양성 및 관리 비용을 초래한다는 측면에서 예산제약을 받는다.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의 주 이용 층은 맞벌이 가정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라’형의 경우 일반가정의 비율도 45.7%로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표 6). 전반적으로 조손가정, 장애부모가정의 이용비율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조사되어, 해당가정의 경우 아이돌봄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낮아서 이용률이 낮은 것은 아닌지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

표 5.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및 본인부담금(2014년 기준)

| 유형 | 소득기준('14년) (전국가구 평균소득, 4인 기준) | 시간제 | | 종일제 0세 (15개월 이하) | | 종일제 1세 (16~24개월) | |
|----|-------------------------------------|--------|--------|---------------------|------|---------------------|------|
| |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 가형 | 50% 이하 (월 241만원) | 4,250원 | 1,250원 | 75만원 | 35만원 | 70만원 | 40만원 |
| 나형 | 50~70%이하 (월 338만원) | 2,250원 | 3,250원 | 65만원 | 45만원 | 60만원 | 50만원 |
| 다형 | 70~100% 이하 (월 483만원) | 1,250원 | 4,250원 | 55만원 | 55만원 | 50만원 | 60만원 |
| 라형 | 100% 초과 | - | 5,500원 | 45만원 | 65만원 | 40만원 | 70만원 |

자료: 여성가족부, 「2014년도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표 6. 2013년 시간제 이용가구 유형 현황

(단위: 가구, %)

| 구분 | 한부모 가정 | 조손 가정 | 장애부모 가정 | 맞벌이 가정 | 다자녀 가정 | 기타 양육부담가정 | 일반 가정 | 계 | |
|----|--------|-----------------|-------------|--------------|------------------|-----------------|----------------|------------------|-------------------|
| 빈도 | 가형 | 2,632 (12.6) | 15 (0.1) | 343 (1.6) | 9,547 (45.5) | 3,597 (17.2) | 887 (4.2) | 3,939 (18.8) | 20,960 (100.0) |
| | 나형 | 18 (0.3) | 0 - | 23 (0.4) | 3,578 (65.5) | 819 (15) | 184 (3.4) | 839 (15.4) | 5,461 (100.0) |
| | 다형 | 14 (0.3) | 0 - | 15 (0.4) | 2,835 (67.9) | 543 (13) | 112 (2.7) | 659 (15.8) | 4,178 (100.0) |
| | 라형 | 252 (1.5) | 18 (0.1) | 24 (0.1) | 8,211 (48.0) | 738 (4.3) | 47 (0.3) | 7,811 (45.7) | 17,101 (100.0) |
| | 계 | 2,916 (6.1) | 33 (0.1) | 405 (0.8) | 24,171 (50.7) | 5,697 (11.9) | 1,230 (2.6) | 13,248 (27.8) | 47,700 (100.0) |

자료: 여성가족부, 「2013 아이돌봄 지원사업 결과보고서」.

3. 양육지원서비스 이용 현황 및 만족도

1) 서비스 이용 현황

양육지원서비스 이용현황을 분석하기 위하여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패널등의 2차 자료와 2014년도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수행된 「자

녀양육 실태 및 정책요구도·수요도」조사⁸⁾ 자료를 이용하였다.

전국보육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조사 대상 아동 중 개인양육지원 서비스 이용 아동은 2009년 25.8%에서 2012년 37.2%로 증가하였으며, 개인양육지원서비스만 단독으로 이용하는 아동 또한 9.4%에서 11.3%로 증가하였다. 이와 함

표 7. 개인양육지원서비스 이용 아동 수와 비율(2009년, 2012년)

(단위: 명, %)

| 구분 | 전체 보육 대상아동(a) | | 개인양육지원 이용아동(b) (b=c+d) (b/a) | | 개인양육지원 단독이용아동(c) (c/a) | | 개인양육지원과 기관병행 이용아동(d) (d/a) | |
|-------|---------------|---------|---------------------------------|--------|---------------------------|--------|-------------------------------|--------|
| 2009년 | 3,304 | (100.0) | 852 | (25.8) | 312 | (9.4) | 540 | (16.2) |
| 2012년 | 3,343 | (100.0) | 1,243 | (37.2) | 379 | (11.3) | 864 | (25.8) |

자료: 보건복지부, 「2012년 전국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보고」, pp.413

8) '자녀양육 실태 및 돌봄지원서비스 개선방안: 맞벌이 가구 중심으로' 연구를 위해 수행된 조사로, 조사 대상은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시설보육 및 기타 보육서비스를 이용하여 양육하는 기혼여성으로, 2014.8.11.~ 2014.9.10. 동안 총 511명을 대상으로 1대1 면접조사를 실시하였음.

표 8. 자녀의 양육서비스 이용 현황(2008~2011년)

(단위: 명, (%))

| 구분 | | 전체 | 맞벌이 | 홀벌이 |
|----------------|-------------|---------------|-------------|---------------|
| 2008년 (만0세) | 개인대리양육 | 294 (14.1) | 274 (43.8) | 5 (0.4) |
| | 시설양육 | 43 (2.1) | 42 (6.7) | 1 (0.1) |
| | 시설&개인 대리 양육 | 3 (0.2) | 3 (0.5) | 0 (0.0) |
| | 부모양육 | 1738 (83.6) | 309 (49.0) | 1,343 (99.6) |
| | 계 | 2,078 (100.0) | 625 (100.0) | 1,349 (100.0) |
| 2009년 (만1세) | 개인대리양육 | 296 (15.8) | 274 (49.2) | 4 (0.3) |
| | 시설양육 | 192 (10.2) | 147 (26.4) | 40 (3.2) |
| | 시설&개인 대리 양육 | 17 (0.8) | 15 (2.7) | 2 (0.2) |
| | 부모양육 | 1370 (73.1) | 121 (21.7) | 1,212 (96.3) |
| | 계 | 1,875 (100.0) | 557 (100.0) | 1,258 (100.0) |
| 2010년 (만2세) | 개인대리양육 | 169 (9.4) | 154 (26.7) | 7 (0.6) |
| | 시설양육 | 777 (43.2) | 346 (60.1) | 399 (34.3) |
| | 시설&개인 대리 양육 | 13 (0.7) | 13 (2.3) | 0 (0.0) |
| | 부모양육 | 841 (46.7) | 63 (10.9) | 758 (65.1) |
| | 계 | 1,800 (100.0) | 576 (100.0) | 1,164 (100.0) |
| 2011년 (만3세) | 개인대리양육 | 28 (1.6) | 26 (3.8) | 1 (0.1) |
| | 시설양육 | 1394 (79.5) | 577 (85.4) | 773 (75.1) |
| | 시설&개인 대리 양육 | 58 (3.3) | 54 (8.0) | 3 (0.3) |
| | 부모양육 | 274 (15.6) | 19 (2.8) | 252 (24.5) |
| | 계 | 1,754 (100.0) | 676 (100.0) | 1,029 (100.0) |

주: 전체 응답자는 패널에 응답한 모든 사람을 포함함. 단, 결측은 제외됨.
자료: 육아정책연구소, 「한국아동패널」 (원자료)

계, 개인양육지원서비스와 기관서비스를 병행으로 이용하는 아동 비율 또한 16.2%에서 25.8%로 증가하였다(표 7). 이처럼 개인양육지원 서비스 이용 아동은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이에 대한 서비스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아동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연령에 따른 양육유형변화를 살펴본 결과(표 8), 2008년 아동이 만 0세 때는 대부분 부모가 양육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비취업모 가구의 경우 99.6%가 부모가 양육

을 하며 맞벌이의 경우에도 부모가 양육(49.0%)하거나 개인 대리양육(43.8%)을 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시설양육 비율은 6.7%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유아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시설양육비율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으나 맞벌이의 경우, 만 3세 이전까지는 개인대리양육의 비율도 상당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2009년 아동이 만 1세가 되면, 개인대리양육과 시설양육의 비율이 높아지면서 부모가 직접 양육하는 비율이 큰 폭으로 낮아지는 것으로 조사되었

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기간이 종료되어 부모의 양육이 크게 줄어들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여전히 만 1세에 개인대리양육이 49.2%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아동이 만 2세가 되면, 시설양육과 부모양육으로 양분되는 현상이 나타나며, 맞벌이가구의 경우 시설양육이 60.1%, 개인대리양육 26.7%인 반면 홑벌이가구의 경우 시설양육이 34.3%, 부모양육이 65.1%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아동이 만 3세가 되는 시기에는 대부분

이 시설양육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맞벌이 가구의 경우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 등의 시설양육을 이용하는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맞벌이 가구는 여전히 대리양육을 3.8%로 유지하고 있으며, 개인대리양육과 시설양육을 함께 이용하는 경우도 8.0%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맞벌이 가정 내 개인대리양육 형태를 살펴보면(표 9), 대부분 혈연을 통한 개인대리양육을 지속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혈연을 통한 개인 대리

표 9. 맞벌이 가정 내 개인대리양육 형태(2008~2011년)

(단위 : 명, %)

| 구분 | 2008년(만 0세) | 2009년(만 1세) | 2010년(만 2세) | 2011년(만 3세) |
|-----|-------------|-------------|-------------|-------------|
| 혈 연 | 239 [86.3] | 244 [84.4] | 145 [87.3] | 63 [84.0] |
| 비혈연 | 38 [13.7] | 45 [15.6] | 21 [12.7] | 12 [16.0] |
| 계 | 277 [100.0] | 289 [100.0] | 166 [100.0] | 75 [100.0] |

주: 결측은 제외됨.
자료: 육아정책연구소, 「한국아동패널」(원자료)

표 10. 개인양육지원서비스 이용사유(2004년, 2009년, 2012년)

(단위 : %, 명)

| 구분 | 2004년 | 2009년 | 2012년 |
|---------------|-------|-------|-------|
| 너무 어려 적응애로 | 53.0 | 30.6 | 68.5 |
| 비용부담 | 30.8 | 14.7 | 2.0 |
| 원하는 시간 이용 힘들 | 2.0 | 9.9 | 7.2 |
| 데리고 다니기 번거로움 | - | 0.7 | 0.5 |
| 시설환경 열악함 | - | 0.6 | 1.2 |
| 한사람이 돌봐 불안 | 2.5 | 2.9 | 4.1 |
| 환경변화로 정서 우려 | 4.0 | 2.4 | 3.7 |
| 대기자 많음 | - | 0.6 | 5.8 |
| 주변에 마땅한 곳이 없음 | 3.7 | 13.2 | 5.9 |
| 기타 | 4.0 | 24.2 | 1.2 |

자료: 보건복지부, 「2012년 전국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보고」, pp.416

양육은 15% 내외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개인양육지원서비스 이용사유를 살펴보면 '너무 어려 적응 애로' 때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2012년 68.5%로 높게 나타났다(표 10). 반면, 시설이용에 대한 비용부담으로 인해 개인양육지원 서비스를 이용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급격하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보육료·교육료 지원 확대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2) 정책 인지도 및 만족도

현재 진행되고 있는 양육지원정책에 대한 인지도 여부를 살펴본 결과, 무상보육과 양육수당 지급 정책은 전 계층에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지원 정책으로 이에 대한 인지도가 높은 반면, 아이돌봄서비스 사업의 경우 사업규모도 그리 크지 않고, 정책 수혜대상자도 소득계층에 따라 선별적인 면이 있어서 이에 대한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이

해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아이돌봄 사업에 대한 수요증가 및 정책의의를 고려할 때 좀 더 적극적인 사업 홍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양육지원정책이 도움되는 정도를 살펴보기 위해, 현재 지원받고 있다고 응답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현재 지원받고 있는 지원정책의 양육부담 해소의 도움정도를 살펴본 결과, 맞벌이가 홀벌이보다 양육지원정책의 양육부담 도움정도에 대해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적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던 지원정책은 무상보육, 양육수당, 아이돌봄 지원사업이었다. 즉 맞벌이 여성은 홀벌이 여성보다 무상보육, 양육수당, 아이돌봄지원사업이 양육부담해소에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고 있다. 특히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맞벌이 여성과 홀벌이 여성간의 만족도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맞벌이 가구와 홀벌이 가구의 서비스 기대수준 및 이용이유의 차이 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맞벌이 가구의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이 양육부담

표 11. 양육지원정책 인지도여부

(단위: 명, %)

| 구분 | | 무상보육 | | 만3~4세 누리과정도입 | | 양육수당 지원 | | 아이돌봄 지원사업 | |
|-----|------|------|---------|--------------|---------|---------|---------|-----------|---------|
| 맞벌이 | 잘안다 | 289 | { 81.4} | 214 | { 60.3} | 242 | { 68.2} | 135 | { 38.0} |
| | 대략안다 | 60 | { 16.9} | 115 | { 32.4} | 102 | { 28.7} | 175 | { 49.3} |
| | 모른다 | 6 | { 1.7} | 26 | { 7.3} | 11 | { 3.1} | 45 | { 12.7} |
| | 계 | 355 | {100.0} | 355 | {100.0} | 355 | {100.0} | 355 | {100.0} |
| 홀벌이 | 잘안다 | 122 | { 78.2} | 83 | { 53.2} | 103 | { 66.0} | 44 | { 28.2} |
| | 대략안다 | 34 | { 21.8} | 58 | { 37.2} | 49 | { 31.4} | 86 | { 55.1} |
| | 모른다 | 0 | { 0.0} | 15 | { 9.6} | 4 | { 2.6} | 26 | { 16.7} |
| | 계 | 156 | {100.0} | 156 | {100.0} | 156 | {100.0} | 156 | {100.0} |

자료: 「자녀양육 실태 및 정책요구도·수요도」조사

표 12. 양육지원정책이 양육부담을 해소하는데 도움 정도

(단위: 점)

| 구분 | 맞벌이 | | 홀벌이 | | t |
|---------------|------|------|------|------|--------|
| | 평균 | 표준편차 | 평균 | 표준편차 | |
| 무상보육 | 4.43 | 0.62 | 4.29 | 0.72 | 1.912+ |
| 만 3~4세 누리과정도입 | 4.19 | 0.56 | 4.04 | 0.76 | 1.629 |
| 양육수당 지원 | 4.25 | 0.73 | 4.06 | 0.75 | 1.888+ |
| 아이돌봄 지원사업 | 4.28 | 0.66 | 3.85 | 1.07 | 1.864+ |

주: +:P<.1, *:P<.05, **:P<0.01, ***P<0.001
 자료: 「자녀양육 실태 및 정책요구도·수요도」조사

감소에 매우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고려할 때 해당 정책의 확대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가정내 돌봄지원서비스 만족도를 살펴보면(표 13), 돌봄제공자에 따라 만족도에 차이가 조금씩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조부모에 대한 만족도

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가까운 혈연관계에 의한 신뢰성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된다. 조부모가 가정양육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때 이용시간, 이용비용, 양육방식, 전문성, 성실성 등 모든 면에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표 13. 맞벌이의 개인대리양육서비스 만족도

(단위: 점)

| 구분 | 조부모 | | 친인척 | | 베이비시터 | | 아이돌봄 | | 계 ¹⁾ | | F |
|-----------------|------|------|------|------|-------|------|------|------|-----------------|------|-----------|
| | 평균 | 표준편차 | 평균 | 표준편차 | 평균 | 표준편차 | 평균 | 표준편차 | 평균 | 표준편차 | |
| 이용시간 | 4.41 | .58 | 4.32 | .48 | 4.12 | .60 | 4.18 | .95 | 4.34 | .61 | 2.112 |
| 이용비용 | 4.42 | .66 | 4.18 | .72 | 3.52 | .82 | 4.00 | 1.00 | 4.24 | .78 | 11.717*** |
| 양육방식 (서비스내용) | 4.25 | .75 | 4.07 | .66 | 3.88 | .67 | 3.94 | .66 | 4.15 | .73 | 2.612+ |
| 돌보는 사람 전문성 | 3.91 | .81 | 3.75 | .70 | 3.68 | .56 | 3.82 | .88 | 3.86 | .77 | 0.855 |
| 돌보는 사람 성실성 | 4.39 | .58 | 4.36 | .56 | 3.92 | .49 | 4.29 | .47 | 4.32 | .58 | 4.907** |

주: *:P<.05, **:P<0.01, ***P<0.001, +:P<.1
 1) 계에서 조부모와 아이돌봄을 함께 이용(4명)하거나 지인(2명)을 이용한 경우는 제외됨.
 자료: 「자녀양육 실태 및 정책요구도·수요도」조사

비혈연서비스인 베이비시터와 아이돌봄서비스를 비교하였을 때, 전반적으로 베이비시터보다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대한 만족도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용비용'과 '돌보는 사람의 성실성'에 대한 만족도를 비교하였을 때, 아이돌봄에 대한 만족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아이돌봄지원사업이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사전 교육을 받은 돌보미가 파견된다는 점에서 이용비용과 전문성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가정 내 돌봄지원서비스 유형에 관계없이 전반적으로 만족도가 가장 높은 항목은 '이용시간'인 것으로 나타났으며(4.34점), 이는 가정양육지원 서비스는 부모의 퇴근시간이 늦어지더라도 늦은 시간까지 자녀를 돌봐줄 수 있다는 점에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보인다.

4. 나가며

전반적으로 개인양육서비스이용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 만 3세 이전까지는 개인양육의 비율이 상당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개인양육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경우 대부분 친인척 돌봄에 의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아기에는 개인양육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주변 친인척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사설베이비시터를 이용하거나 그에 따른 비용부담으로 시설보육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가정 내 보육에 대한 지원 강화가 요구된다. 또한 맞벌이 가구의 경우 유아기에 접어들어서 시설보육을 이용할 경우에도 근로시간으로 인해 초래

되는 양육공백을 채우기 위해 또는 장시간 시설보육을 선호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개인돌봄서비스를 병행하여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양육수당 및 아이돌봄서비스를 통해서 영아기 가정양육에 대한 수요에 대응하고 있다. 영아기에 대한 가정양육 선호도가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시설보육 이용자와 형평성 측면에서 양육수당은 많은 차이를 가지고 있다. 가정양육에 대한 부모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양육수당을 좀 더 현실화하여 시설보육 이용자와의 형평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또한 맞벌이 가구의 경우, 가정양육서비스 제공자의 대부분이 혈연관계의 친인척으로 조사되었으며, 친인척의 대부분은 조부모에 해당한다는 것이 현실이다. 이처럼 국내 가정양육 제공자의 상당부분이 조부모님들인 상황에서, 서울 서초구는 조부모가 손자녀를 돌보는 경우에 대한 지원정책으로 손주돌보미 사업을 시행하고 있기도 하다. 타 지자체에서도 유사정책을 실시하고자 하였으나 양육수당과의 중복수혜 논란 등으로 추진되지 못한 사례가 있으며, 여성가족부에서도 해당사업을 전국적으로 실시하고자 하였으나 마찬가지로 이 중 복지 논란등의 이유로 정책추진이 무산된 바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부모 돌봄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사회적으로 개인돌봄서비스 체계를 강화하는 전략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본다. 지원서비스가 충분히 제공된다면, 굳이 조부모에게 손자녀 양육의 부담을 주지 않아도 될 것이다.

현재 개인돌봄서비스 지원정책으로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은 아이돌봄 지원사업이 유일한 사업으로 서비스 공급이 수요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으로 상당수의 가정이 제 때에 해당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 2014년도부터 맞벌이 가구의 우선순위를 제고하기는 했지만 예산 및 운용방식등의 문제로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현재의 예산상황에서는 지원대상 2순위(일반가정, 취업모)까지 서비스 지원이 이루어지는 데에 어려움이 있으며 정부 지원 없이 이루어지는 시간제 '라'형의 경우, 센터의 예산운용 실적으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서비스제공이 소극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시간제 '라'형의 경우 이용료는 전액 사용자 부담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이므로 다른 유형에 비하여 소요되는 예산이 적으나, 도우미 양성 및 교

육, 교통비 등에 예산이 소요된다고 볼 수 있다. 중산층 맞벌이 가구의 실질적 수요를 고려하여 시간제 '라'형의 서비스가 보다 더 원활히 제공될 수 있도록 도우미 양성에 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으며 '라'형 연계건수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센터 평가체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 또한 아이돌봄 이용현황에 따르면, 조손가정, 장애부모가정의 이용비율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조사된바, 해당 가구의 경우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낮아서 이용률이 낮은 것은 아닌지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 ■